

수 사 중 이 의 제 기 서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	
연락처			
사건과의 관계	[]고소인 []고발인 []피해자 []법정대리인		
대상사건	죄 명		
	수사관서		사건번호
이의제기 사유 (해당란 체크)	[]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[] 사법경찰관(리)가 「형사소송법」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[]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위법·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		
구체적 사유			
첨부서류			

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.

년 월 일

이의제기인 (서명 또는 인)

소속관서장 귀하